

# 태백항지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

## 조합원모집 개요

- 본 주택의 조합원모집 공고일은 2024년 09월 06일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본 주택의 건설지역(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405-21번지 일원)에서 태백항지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및 주택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며, 주택사업 관련 인·허가 진행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가입 자격조건이 될 경우 주택청약통장 없이 신청(가입)이 가능합니다.
- 본 태백항지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 공고의 내용을 확인 후 신청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계약착오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고,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본 사업은 개개인의 조합원이 모인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무산 또는 사업진행 지연 시 모든 책임은 조합원 가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모집주체 |

고유번호	상호(성명)	대표자	주소
603-82-80380	태백항지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 건 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대학길 53-1, 3층 (황지동)

### | 업무대행자 |

법인등록번호	상호(성명)	대표자	주소
195511-0234602	주식회사 유유	윤재완	경상남도 김해시 삼문로9, 301호(대청동,우리트윈스빌딩)

### |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 |

대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405-21번지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사업부지	39,962㎡	연면적	지상	56,745.6314㎡
	제척부지	-		지하	17,372.9373㎡
	실사용부지	39,962㎡		계	74,118.5687㎡
건축면적	4,978.6896㎡		용적률 산정 면적	56,745.6314㎡	
건폐율	12.4586%		용적률	141.9990%	

### |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의 확보 현황 및 계획 |

▶ 토지동의를 현황 : 건축부지면적 39,943㎡ / 39,962㎡(99.95%)

구분	동의 면적 및 확보비율(A)			미동의 면적 및 비율(B)			합 계(A+B)		
	면적(㎡)	면적(평)	비율(%)	면적(㎡)	면적(평)	비율(%)	면적(㎡)	면적(평)	비율(%)
총 계	39,943	12,082.757	99.9524	19	5.7475	0.0476	39,962	12,088.505	100
사유지	39,943	12,082.757	99.9524				39,943	12,082.757	99.9524
국공유지				19	5.7475	0.0476	19	5.7475	0.0476

▶ 토지사용권원 확보 예정 계획

구분	토지사용권원 확보 예정 계획					비고
	조합원모집공고 이후	조합원 모집 55%	조합원모집 65%	조합원모집 80%시	사업계획 승인접수 전	
사유지	100%	100%	100%	100%	100%	
국공유지	-	-	-	-	100%	사업계획승인 이후 매각진행

※ 사업계획승인 접수 전 토지 95%이상 소유권확보 예정으로 상기 계획 일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및 주택건설 예정기간 |

규모	지하 1층, 지상13 ~ 20층, 8 개동,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지시설			
구분	84형	102형	121형	합계
공급예정세대	363세대	80세대	36세대	479세대
건축예정기간	착공일로부터 36개월(공사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예정세대수는 479세대이며, 인허가과정(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조합원 모집세대수 및 모집기간 (조합원 분할 모집 계획없음) |

규모	지하 1층, 지상13 ~ 20층, 8 개동,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지시설			
구분	84형	102형	121형	합계
공급예정세대	363세대	80세대	36세대	479세대
건축예정기간	착공일로부터 36개월(공사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 공고 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별도의 모집신고(공고) 없이 신규 신청자에게 선착순으로 재공급 할 수 있습니다.

※ 조합설립인가 이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분담금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가조합원 모집 또는 일반(임의) 분양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주택타입	세대별 주택면적(m <sup>2</sup> )					계약면적 (m <sup>2</sup> )	전용률 (%)	비고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주거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부대시설	지하 주차장			
84	84.9110	24.2101	109.1211	3.4582	32.6341	145.2134	77.8135	
102	102.3278	28.5761	130.9039	4.1682	39.3280	174.4001	78.1701	
121	121.3585	32.9901	154.3486	4.9432	46.6421	205.9339	78.6262	

※ 상가 공급면적 등은 인허가과정(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음(m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sup>2</sup> × 0.3025 또는 m<sup>2</sup> ÷ 3.3058)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해당 동의 공용부분이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 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자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자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층별 주택공급면적은 건축심의 시 확정 예정입니다.

## 신청자격,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 가. 신청자격

1. 주택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태백황지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설립인가 신청일 이전 및 입주 시 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을 기준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판단함.

-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함)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른 당첨자 지위 및 이를 승계한 사람도 포함. 이하 같음)
- 2)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 3)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일 것
- 4)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는 사람(주택법 개정 기준)
- 5) 가입신청일 기준으로 관련 법령 변경 시에는 변경된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계약자 준비서류	준비물 구비 서류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막도장
		인감증명서 3통 / 주민등록등본 2통 / 주민등록초본 2통(과거 주소변경 사실내역포함, 배우자분리세대일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2통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계약금 및 조합업무대행비 입금증(이체확인증)
제3자(계약자 이외) 대리계약시	상기 준비물 및 구비서류의 추가로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 하여야 함. 1.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위임용) 2. 위임장(모델하우스 비치) 3. 대리인 인감도장 및 신분증	
신청일시	2024년 09월 07일부터 (10:00 ~ 17:00)	
신청장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번영로52 (황지동) 태백황지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	

※ 상기 내용 이외의 신청자의 조합원자격에 대해서는 주택법제11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규칙 제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 제25조, 제53조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의 조합원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사업계획승인 시, 사용검사(또는 임시사용승인)시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검색, 제출서류 등을 통해 확인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른 사실이 판명되거나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금·분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 토지동의를 현황 : 건축부지면적 39,943m<sup>2</sup> / 39,962m<sup>2</sup>(99.95%)

(단위:천원 / VAT 별도)

타입	층수	세대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총액 (분담금)	
			1회차(5%)	2회차(15%)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자납	대출(무이자)	대출(무이자)						자납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	갑(조합)이 별도 고지하는 지정일						입주지정기간		
84	1층	20	15,000	45,000	27,660	27,660	27,660	27,660	27,660	27,660	27,660	22,980	301,600
	2층	20	15,000	45,000	28,280	28,280	28,280	28,280	28,280	28,280	28,280	24,840	307,800
	3층	20	15,000	45,000	28,890	28,890	28,890	28,890	28,890	28,890	28,890	26,670	313,900
	4층	20	15,000	45,000	29,510	29,510	29,510	29,510	29,510	29,510	29,510	28,530	320,100
	5층	20	15,000	45,000	30,120	30,120	30,120	30,120	30,120	30,120	30,120	30,360	326,200
	6층 이상	263	15,000	45,000	30,730	30,730	30,730	30,730	30,730	30,730	30,730	32,190	332,300
102	1층	4	20,000	50,000	42,080	42,080	42,080	42,080	42,080	42,080	42,080	56,240	445,800
	2층	4	20,000	50,000	43,020	43,020	43,020	43,020	43,020	43,020	43,020	59,060	455,200
	3층	4	20,000	50,000	43,950	43,950	43,950	43,950	43,950	43,950	43,950	61,850	464,500
	4층	4	20,000	50,000	44,890	44,890	44,890	44,890	44,890	44,890	44,890	64,670	473,900
	5층	4	20,000	50,000	45,820	45,820	45,820	45,820	45,820	45,820	45,820	67,460	483,200
	6층 이상	60	20,000	50,000	46,760	46,760	46,760	46,760	46,760	46,760	46,760	70,280	492,600
121	1층	2	25,000	55,000	49,620	49,620	49,620	49,620	49,620	49,620	49,620	68,860	521,200
	2층	2	25,000	55,000	50,720	50,720	50,720	50,720	50,720	50,720	50,720	72,160	532,200
	3층	2	25,000	55,000	51,820	51,820	51,820	51,820	51,820	51,820	51,820	75,460	543,200
	4층	2	25,000	55,000	52,930	52,930	52,930	52,930	52,930	52,930	52,930	78,790	554,300
	5층	2	25,000	55,000	54,030	54,030	54,030	54,030	54,030	54,030	54,030	82,090	565,300
	6층 이상	26	25,000	55,000	55,130	55,130	55,130	55,130	55,130	55,130	55,130	85,390	576,300
계	479												

\* 상기 금액은 업무대행비 25,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계약금 2회차 금액에서 업무대행비가 정산됩니다. \* 계약금 2회차 대출 시 한도 문제로 상기 금액 대비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출가능자로서의 대체 또는 창립총회 후 자납하시면 됩니다.

- ▶ 본 납부시기는 사업연(인·허가 일정 및 금융대출조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납부시기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개별통보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 ▶ 상기 계약금에는 업무대행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납부시기와 납부 방법에 따라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조합원분담금은 가격지수를 면적별 구분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며, 변동 발생시에는 조합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 ▶ 2차 계약금 및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약정한 납부 기일 또는 납부시기 통보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조합가입 계약사상의 연체료가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모집 대상에서 제외하며, 추후 일반(임의)분양할 예정입니다.
- ▶ 중도금 대출은 사업계획승인 및 시공사선정후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최종 확정되며, 대출 미신청자 또는 가입자의 부적격사유로 대출이 불가할 시 가입자는 상기 납부일에 개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발코니확장은 전세대 확장형으로 시공됨으로 가입자의 선택사항 의무사항으로 하며 확장공사비는 상기 분담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확장비 별도)

▶ 업무대행비의 납부시기 및 방법

구분	업무대행비 일금 이천오백만원(₩25,000,000/VAT포함)	
	1차 (계약시) 일금 오백만원(₩5,000,000/VAT포함)	2차 (1차 계약후 30일 이내) 일금 이천만원(₩20,000,000/VAT포함)→신용대출
납부시기 및 금액		

▶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는 아래 계좌에 조합원 각자가 직접 납부하며 자금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자금관리신탁사(무궁화신탁)"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 계좌 이외에 입금된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단, 모집주체의 통지로만 납부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분담금과 업무대행비의 입금은 [표1]에 따라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고 입금 의뢰인 란에 반드시 조합원 번호 및 조합원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예) 입금자명 : 계약번호(000000) 및 이름과 생년월일 6자리(홍길동630612)

▶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계좌

가입신청금 납부계좌	은행명 : 수협은행	1010-2615-7091	예금주 : 주식회사무궁화신탁
분담금 납부계좌	은행명 : 수협은행	1010-2615-7124	예금주 :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업무대행비 납부계좌	은행명 : 수협은행	1010-2615-7143	예금주 : 주식회사무궁화신탁

## | 조합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

구분		상호(성명)	대표자	주소
자금관리사	등록번호 : 120-86-58362	주식회사무궁화신탁	권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포스코타워 역삼22층

1. 조합원 분담금 수납관리 : 조합가입 신청자의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등 조합수입금을 자금관리사 계좌를 개설하여 수납하고 자금관리사에서 조합의 자금요청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입·출금을 관리함.

2. 분담금 환물 : 청약취소, 조합탈퇴, 조합원자격 부적격인하여 조합가입신청자가 납부한 분담금을 환물하여야 할 경우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라 환물처리

3. 사업비 자금집행 : 사업부지매입, 공사비, 각종용역비등 사업비 지출 요청시 적정성 검토 후 집행

\* 조합과 자금관리대리사무사(신탁사)인 무궁화신탁주식회사간의 체결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의하여 무궁화신탁주식회사가 자금관리를 하게 됩니다.

▶ 자금관리의 계획

조합사업의 안정적인 진행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무궁화신탁 주식회사에 자금관리 업무를 위탁하며, 조합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금은 무궁화신탁 주식회사와 계약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 자금관리신탁사는 2024년 08월 08일 주식회사무궁화신탁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 | 조합원 당첨자 발표의 일시·장소 및 방법 |

▶ 당첨자 발표일시 : 조합원 자격 및 계약금 입금 완납 확인 후 즉시

▶ 당첨자 발표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번영로52 (황지동) 태백향지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

▶ 당첨자 발표방법 : 주택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2조 등에 의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로 계약금입금 후 계약서 작성으로 당첨여부 통보

\* 조합원의 자격은 당첨후 가입계약이 완료된 조합원으로 조합설립인가 시 확정됨

\* 조합원자격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사업계획승인 시, 사용검사(또는 임시사용승인)시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검색, 제출서류 등을 통해 확정된다.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른 사실이 판명되거나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조합탈퇴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조합총회 또는 이사회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 및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소명기간을 정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 분담금 등을 지정일 또는 최고 이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2.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사업추진에 피해(손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3. 유사단체 결성, 일단의 대표권 행사, 본 사업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조합에 피해를 가하는 때 또는 막연한 내용을 인터넷 및 공공매체를 이용하여 조합의 이미지 손상 및 조합원의 불안감을 조성·선동하여 조합의 사업 진행에 혼란을 유도하여 피해를 끼칠 경우
  4. 잔금납부기간 최종일로부터 30일 이내 조합원이 별도 '입주확약서'와 조합원 분담금 및 중도금 대출금(이자 포함)등의 상환 약정서를 조합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5. 기타 조합규약, 조합 가입계약사상의 명시한 내용 및 조합원이 조합에 제출한 서류에 서명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 ▶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공동부담금(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며, 공동부담금(위약금) 가입세대의 총 분담금의 10%이며,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공동부담금(위약금)을 공제하되 공동부담금(위약금)이 납입금보다 많을시, 부족금은 추가 청구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하고 연체료가 있을시 연체료, 공동부담금(위약금)순으로 공제 후 환급하는 것으로 하되 환급시기는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 되었을 때 환급하는 것으로 한다. 위약금은 조합에게 귀속되며, 조합원은 업무대행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조합원은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 동·호수 배정의 시기 및 방법 |

■ 조합원의 동·호수 결정은 조합의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이사회에서 협의한 지정시기에 공정한 추첨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고, 조합원 가입신청시 주택형, 군별로 지정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한다. 세부적인 공급방식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잔여분은 선착순 동·호수를 임의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 가입신청 때에는 동호수를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추가모집조합원의 동·호수도 조합가입 계약시 신청자가 동·호수 지정방식으로 선정하며, 추후 인허가변경에 따라 동·호수배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합설립인가신청예정일 · 사업계획승인신청예정일 · 착공예정일 · 입주예정일 |**

구 분	조합설립인가신청예정일	사업계획승인신청예정일	착공예정일	입주예정일
예정일	2024년 12월	2025년 01월	2025년 06월말	2028년 06월말

※ 상기 사업일정은 건축심의 등 인·허가일정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사항 |**

- 조합원은 임의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구성원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① 사업계획으로 정한 조합주택의 공급 청구권 ②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③ 임원과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이 있습니다. 단, 피선출권은 조합원에 한하며, 조합원 이외의 자는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주택법령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자격자로서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본 사업이 추진됨을 인지하고 조합원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기로 하며, 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향후 조합의 규약준수,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 및 본 사업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조합원 가입시 유의사항 |**

- 팜플렛 및 전단지 등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발코니 확장공사비 별도)
- 단위세대 예시 평면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평면 형태 및 면적 등은 인허가과정 및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분담금은 입주예정 대상 면적별 세대수의 평균산출로 책정된 금액으로 조합원 개별 분담금을 확정, 결정하기로 합니다.
- 본사업은 인허가과정(조합설립, 지구단위,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사업부지, 건축규모, 단지배치 및 세대별 공급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조합의 총회를 거쳐 조합원 분담금이 조정될 수 있고 조합원은 이에 동의하여 조정된 분담금을 조합의 이사회에 위임하며 조합은 이사회에서 변경내역을 확정하여 조합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조합원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사는 조합설립이후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 조합원분담금은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금액이며, 본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이전비용, 학교용지부담금 등 관련법규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은 준공 시 조합원이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변경, 각종 심의의 장기화 등)에서 추가분담금 발생요인이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개인의 사정으로 무주택자로서의 조합원자격은 없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갖출 것을 약속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조합원자격을 확인한 후 정식조합원으로 인정됩니다. 최종 자격 미달시 조합가입자격 박탈 및 조합가입 계약해지가 됩니다. (조합규약 규정 적용 함.)
- 본 사업관련 사업(모집)주체의 모델하우스의 견본, 각종 팜플렛, 안내문, 인터넷광고, 지면광고 등의 내용은 예정사항으로 본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인허가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최종적인 사항은 인허가 완료 후 확정합니다.



**| 모델하우스 및 신청장소 |**

- 모델하우스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번영로52 (황지동) 1층 태백황지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
- 모 집 문 의 : ☎ 033-806-7001
- 사 업 주 체 시 행 사 : 태백황지지역주택조합
- 업 무 대 행 사 : 주식회사 유유
- 자금관리신탁사 : 주식회사무궁화신탁

※ 본 조합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업무대행사 및 모델하우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